2026.11.19.

국회예산정책처 | 나보포커스 | 제180호

nabo Focus

#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: 인건비의 국가·지방 부담 구조를 중심으로

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분석관
행정예산분석과 문소희 분석관

## 논의 배경

▪ **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으나, 인건비의 대부분은 지방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**

- 소방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6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나,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형재난 시 소방청장이 시·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·감독하는 등 국가사무의 성격을 함께 지님
- 광역·공동대응이 늘어나면서 소방서비스의 편익이 행정구역 밖으로 확산되고 있어, 경비를 지방이 전담하는 현행 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

▪ **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, 그간의 논의는 방향 제시에 집중되어 이를 제도화할 경우의 재정소요에 대한 분석은 부족함**

- 국가가 인건비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재정소요와 지방의 부담 경감 규모가 달라지므로, 제도 설계에 앞서 국가 부담 확대 시의 재정소요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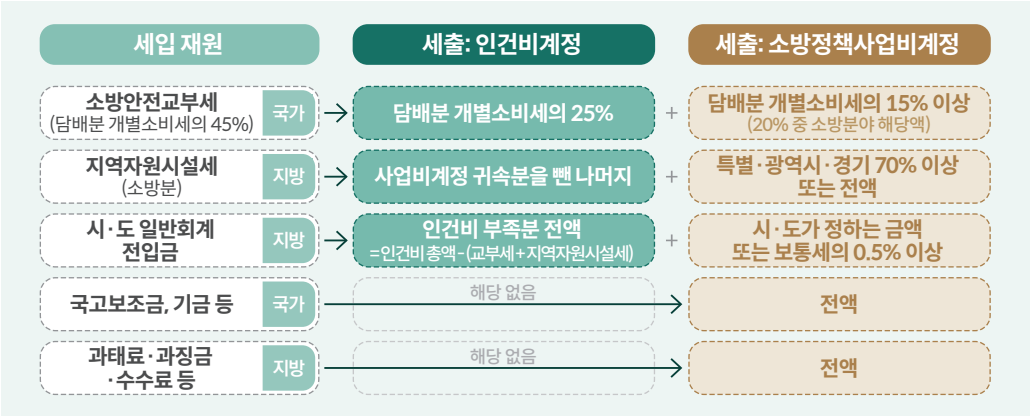
▪ **이에 본고에서는 소방재정의 현황과 관련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을 살펴보고,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경우의 국가·지방 부담 변화를 추계·비교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**

## 소방재정 현황

▪ **소방재정은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에 따라 각 시·도가 소방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며,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이원화하여 구성됨**

- 소방특별회계는 국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,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수입으로 자율 편성함

[그림 1] 소방특별회계 세입·세출 구조
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▪ **소방재정 중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7.0% 증가하여 시·도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9.5%에서 2026년 75.8%로 상승함**

- 소방공무원 현원이 최근 8년간 16,399명(33.8%) 증가하여 2026년 인건비가 6조 5,129억 원에 이르면서, 장비·차량 확충, 소방 대원 안전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비중이 감소(30.5%→24.2%)하고 규모도 정체됨(연평균 증가율 0.4%)

[표 1] 소방예산 인건비·사업비 추이

(단위: 억원, %)

| 구분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연평균 증가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액 | 66,893 | 71,913 | 77,302 | 80,952 | 84,790 | 85,968 | 5.1 |
| 인건비 | 46,465<br>(69.5) | 51,260<br>(71.3) | 55,232<br>(71.5) | 60,017<br>(74.1) | 63,231<br>(74.6) | 65,129<br>(75.8) | 7.0<br>- |
| 사업비 | 20,429<br>(30.5) | 20,653<br>(28.7) | 22,070<br>(28.5) | 20,935<br>(25.9) | 21,560<br>(25.4) | 20,839<br>(24.2) | 0.4<br>- |

주: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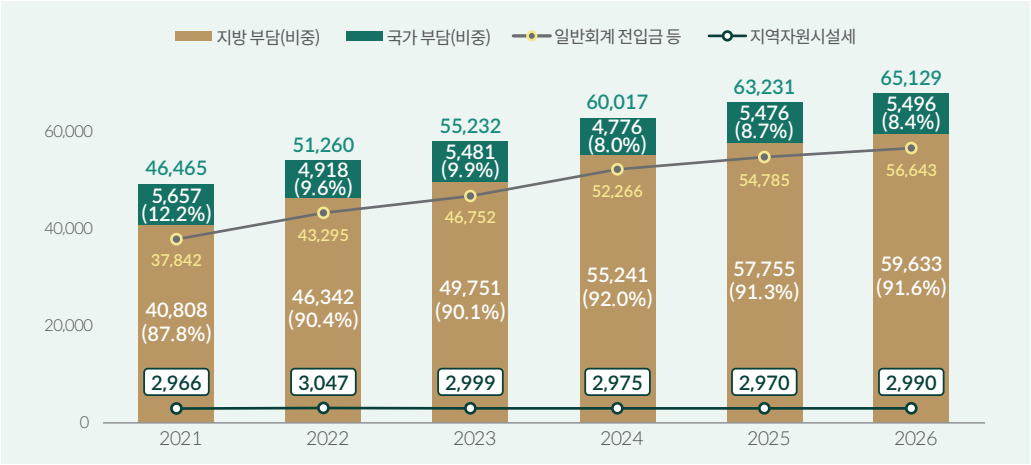
자료: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▪ **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정원 확충을 주도하였지만, 인건비의 지방 부담 비중은 2021년 87.8%에서 2026년 91.6%로 상승함**

- 국가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원하나 그 규모가 5,000억원 내외(2026년 5,496억원)에 머물러, 인건비 증가분은 시·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(2026년 5조 6,643억원)으로 충당하고 있음

[그림 2]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·지방 부담 추이

(단위: 억원)




자료: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재정수반요인별 개정안 발의 현황

▪ **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 부담이 심화되자, 인건비 국가 부담 강화 또는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규정한 개정안이 9건 발의됨**

- 인건비의 국가 부담 강화를 규정한 개정안 7건은 부담 방식에 따라 부족분 전액 부담(2건), 인건비·보수 부담(4건), 재량지원(1건)으로 구분됨
- 「지방세법」 개정안 2건은 2026년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여 국가의 추가 지출 없이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
  - 다만, 같은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정부안(제2221926호)이 제출되어 있고 고위당정협의회(2026.11.8.)에서 세원 활용 방향에 대한 이견이 확인되어, 국회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임

[표 2] 재정수반요인별 소방재정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

| 구분 | 개정안 | 대표발의 (의안번호)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인건비 부족분 국가 부담 | 「소방회계법」 개정안 | 김재섭의원 (제2221954호) 정청래의원 (제2222001호) | 인건비계정 세입 중 시·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던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 |
| 인건비·보수 국가 부담 |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안 | 권영진의원 (제2222266호) |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 |
| |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안 | 김현정의원 (제2222236호) |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고,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 |
| | 「소방회계법」 개정안 | 이언주의원 (제2222017호) |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80%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되, 교부세 인건비분을 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교부 |
| | | 조지연의원 (제2222550호) | 인건비 총액의 80% 이상을 국고보조, 인건비계정 잉여금의 사업비계정 전출 허용 |
| 국가 재량지원 |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안 | 엄태영의원 (제2222322호) | 소방 인력 운용, 소방시설의 확충·정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 |
| 재원 확충 | 「지방세법」 개정안 | 부승찬의원 (제2222147호) 김태년의원 (제2222241호) | 2026년 말 일몰예정인 지방교육세(담배소비세액의 43.99%)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|

자료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2026.11.11. 검색 기준)

## 재정소요 분석

- **개정안별 국가 부담 범위·비율, 재원조달 방식 등이 상이하고, 국가 지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현행 제도 유지 시(기준선)와 비교하여 국가와 지방의 비용부담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**
  - 발의된 개정안 9건 중 7건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을 인건비로 한정함

- **(기준선)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027년 6조 9,377억원에서 2031년 8조 7,824억원으로 연평균 6.1% 증가하고, 지방 부담 비중은 2031년 94.3%로 상승함**
  - 담배분 개별소비세 세수가 연 2조원 내외로 정체됨에 따라 국가 부담 비중은 2028년 6.8%에서 2031년 5.7%까지 하락함
  - 지방 부담은 2027년 6조 5,152억원에서 2031년 8조 2,802억원으로 연평균 6.2% 증가하여 인건비 증가율(6.1%)을 상회함

[표 3] 현행 제도 유지 시 국가와 지방의 비용부담 추계결과

(단위: 억원, %)

| 구분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증가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인건비 | 69,377 | 73,608 | 78,084 | 82,818 | 87,824 | 391,711 | 6.1 |
| 국가 부담 (=교부세 인건비 충당분) | 4,225 (6.1) | 5,016 (6.8) | 5,015 (6.4) | 5,019 (6.1) | 5,022 (5.7) | 24,297 (6.2) | 4.4 - |
| 지방 부담 | 65,152 (93.9) | 68,592 (93.2) | 73,069 (93.6) | 77,799 (93.9) | 82,802 (94.3) | 367,414 (93.8) | 6.2 - |

주: 1. 교부세 인건비 충당분은 2027년 정산 감액이 반영된 예산안이고, 2028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「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: 2026~2030」을 활용하여 작성하고, 지방 부담은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충당분(2,990억원 유지 가정)과 일반회계 전입금, 기타의 합계
2.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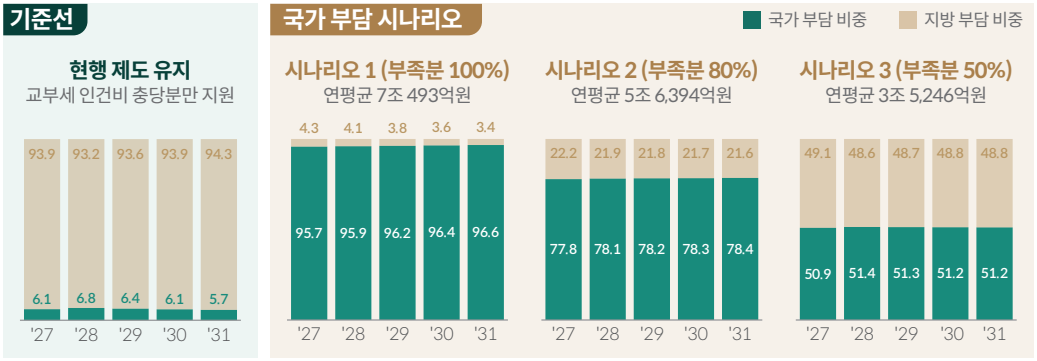
▪ **(시나리오) 발의된 개정안을 고려하여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의 100%, 80%, 50%를 부담하는 경우, 국가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3조 5,246억~7조 493억원이고 부담 비중은 2031년 51.2~96.6%로 상승하여 부담 주체가 국가 중심으로 전환됨**

- 인건비 부족분은 인건비에서 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충당분을 뺀 금액으로 현재 시·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,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국가 추가재정소요는 2031년 기준 부족분의 100% 부담 시 7조 9,812억원, 80% 6조 3,850억원, 50% 3조 9,906억원이며, 지방 부담 비중은 기준선(94.3%) 대비 각각 3.4%, 21.6%, 48.8%로 45.5~90.9%p 하락함

[표 4] 시나리오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 및 기준선 비교

(단위: 억원, %)

| 구분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나리오 1(부족분의 100%) | 62,162 | 65,602 | 70,079 | 74,809 | 79,812 | 352,464 | 70,493 |
| 시나리오 2(부족분의 80%) | 49,730 | 52,482 | 56,063 | 59,847 | 63,850 | 281,972 | 56,394 |
| 시나리오 3(부족분의 50%) | 31,081 | 32,801 | 35,039 | 37,405 | 39,906 | 176,232 | 35,246 |




주: 추계의 전제 및 방법, 상세내역은 의안정보시스템(http://likms.assembly.go.kr)에서 [표 2]의 인건비 부족분 국가 부담 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참고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향후 과제

▪ **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으나, 국가 추가재정소요가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**

▪ **첫째,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범위와 분담 비율의 법정화**

- 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부담 비율(100%·80%·50%)에 따라 연평균 3조 5,246억~7조 493억원으로 달라지므로, 소방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국가·지방 분담 비율과 단계적 상향 경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

▪ **둘째,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구조로 개편**

-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로는 증가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교부세 감소분의 국가 일반회계 보전 등 세수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

▪ **셋째, 지방 부담 경감분의 소방정책사업비 활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**

- 시·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인건비 부족분 전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 부담이 확대되면 자동으로 감소하므로 해당 경감분이 소방 분야로 다시 투입되도록 사업비계정 전입 규모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
발간등록번호 | 31-9700484-001731-14 ISSN | 2672-0280
발행처 |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|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신우 담당 | 행정비용추계과, 행정예산분석과 문의 | 02-6788-4661, 4639
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